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43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7. 04.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07. 05.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07. 1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수정가결

2. 제안사유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외 4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3. 재산현황 총괄

구분	수량	면적(m ²)	기준가격(천원)	비고
취득	계	100	67,802	18,161,989
	토지	79	61,525	5,069,323
	건물	21	6,277	13,092,666
처분	건물	19	2,877	1,192,666 철거

4. 사업별 재산내역

사업명	재산구분	재산유형	재산의 표시			담당부서
			수량	면적(m ²)	기준가격(천원)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취득	토지	15	19,326	561,362	스포츠산업과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취득	토지	25	30,262	1,105,698	스포츠산업과
하이먼 복합문화 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취득	토지	3	1,337	77,973	경제기업과
[변경]하이먼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	-	-	-	-	-	경제기업과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취득·처분	토지	36	10,600	3,324,293	도시교통과
		건물(철거)	19	2,877	1,192,666	
		건물(신축)	2	3,400	11,900,000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 5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목록 1.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 본 건은 동고성 체육시설 1단계 조성사업 준공 후 체육시설 잔여지인 회화면 배둔리 698-15번지 등 토지 15필지 19,236㎡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으로 동고성 지역 주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목록 2.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 본 건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고성읍 수남리 591-1번지 등 토지 25필지 30,262㎡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으로 생활체육으로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파크골프)을 군민이 지역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목록 3.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 본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하이면 덕호리 214번지 등 토지 3필지 1,337㎡를 취득하는 것으로, 2024년도 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해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하이면 신축 이전 청사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목록 4. (변경)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
 - 본 건은 제2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건립사업을 농지법의 행위제한에 따라 취소하는 것임.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시, 관련 부서의 법적 검토를 선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목록 5.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 본 건은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웰빙센터, 마을주차장,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기 위해 배둔리 433-12 등 토지 36필지 10,600㎡를 취득하고, 지상 건물 19건 2,877㎡를 취득하여 멸실 처분하며, 건물 407㎡를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 및 민원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주 문 : 목록 5.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은 회화면 배둔리 472-2번지 외 2필지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결정하기 바람.

9. 심사결과 : 2023. 7 12. 수정 가결함.

- 붙 임: 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2. 수정안 대비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2643호 관련
------	--------------

발의연월일	2023. 7. 12.
발 의 자	김희태 의원

1. 수정이유

- 취득 대상 재산의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1건에 대하여 목록 삭제함.

수정안 대비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 정 안
3. <u>하이먼 복합문화 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u>	<u>〈삭 제〉</u>